



2014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 목 차

<b>제1장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b> .....	<b>1</b>
I. 목적 .....	3
II. 적용대상 .....	3
III. 학교회계운용 일반 사항 .....	3
IV. 학교회계 예산과정 .....	6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	15
VI. 행정 사항 .....	32
<b>제2장 2014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b> .....	<b>37</b>
I. 기본방향 .....	39
II. 2014년도 학교운영비 주요 지원 기준 .....	40
III. 통합사업운영비(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총액배분하는 사업) .....	46
<b>제3장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b> .....	<b>49</b>
<b>제4장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b> .....	<b>83</b>

## 각 종 서 식

1. 제출서류 일람표 .....	95
2. 제출서식 .....	96
3. 학교회계 예·결산서(현황) 서식 .....	101

## 부 록

1. 회계관련 참고 사항 .....	143
2. 전년대비 2014년 주요 변경내용 .....	148



# 제 1 장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 I 목적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적용대상

본 지침은 공립 유·초(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회계에 적용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본 지침에서 정하는 인건비성 경비, 예산안 편성·심의·확정 및 결산의 절차를 제외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III 학교회계운영 일반 사항

### 1. 회계의 설치단위

- 가. 학교회계는 공립 유·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통합 운영학교는 단일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나. 분교 및 분교장의 경우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단일회계를 설치·운영한다.
- 다. 각종학교(부산산업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고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 가.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나.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3월 20일)에 폐쇄한다.

## 3. 금융기관의 이용

- 가. 학교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의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한다.
- 나. 학교회계운영에 지장이 없으며 관련법령(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학교는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이나 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4. 학교회계의 범위

### 가. 세입

#### 1) 이전수입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국고보조금
-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다)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 라) 기타이전수입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기타학교회계전입금 : 학교기업회계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 민간이전수입 : 기타지원금

#### 2) 자체수입

- 가) 학부모부담수입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 수입(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회계의 세입에서 제외(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리)

- 나) 지원금수입 :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 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현장체험 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 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다)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 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지난년도수입,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 3) 기타수입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 나. 세출

- 1) 인적자원 운용 : 교직원대체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3)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4) 선택적 교육활동 :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5)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 6)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7)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 8) 학교재무 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IV 학교회계 예산과정

### 1. 예산의 편성

#### ▷ 예산안 편성 절차

구분	일정	주체	주요내용
단위 학교 준비 사항	연중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예산 편성자료의 꾸준한 수집</li> <li>• 연도별·월별 자금 집행상황 파악</li> <li>• 의존수입(전입금)을 제외한 단위학교 자체수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li> </ul>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2013.11월 말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li> <li>•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제시</li> <li>• 예산과목 및 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li> <li>• 【학교회계 예산반영 사업】은 홈페이지 탑재</li> </ul>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2013.12.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교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li> <li>• 학교 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에 따라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li> <li>•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li> </ul>
↓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2014.1.9 까지)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 교부계획 통보</li> <li>•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수시 통보</li> </ul>
↓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2014.1.25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 확정</li> <li>•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안 확정</li> </ul>
↓			
예산안 제출	2014.1.29 까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유치원 및 학교 운영 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li> </ul>

**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달**

- 1)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장에게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 2) 교육감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나.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 1)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2) 학교장은 교직원 등으로부터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별로 제출 받는 등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다. 전출금 교부계획 통지 및 예산사정**

- 1) 교육감(교육장)은 단위학교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출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조정 및 사정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예산의 심의·확정

### ㉾ 예산안 심의 및 예산 확정 절차

구분	일정	주체	주요내용
예산안 통지	2014.2.16 까지	학교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예산안 통지</li> </ul>
↓			
학교예·결산 소위원회 개최	2014.2.23 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심의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b>학교예·결산소위원회</b> 개최</li> </ul>
↓			
학교장 제안 설명 및 관계자 의견 청취	2014.2.23 까지	학교운영 위원회 및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해 학교장 제안 설명</li> <li>•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li> <li>• 소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li> </ul>
↓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2014.2.23 까지	학교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b>개시 5일 전까지</b> 심의 종료</li> <li>• 학교장에게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li> </ul>
↓			
예산확정	2014.2월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li> </ul>
↓			
예산공개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통신문, 학부모총회,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예산확정 후 10일 이내)</li> <li>• 관할교육청 홈페이지 지정란에 공개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li> </ul>
↓			
예산보고	2014.3.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정 후 3월 16일까지 관할청에 보고</li> </ul>

**가.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학교예·결산소위원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예·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의 제안설명**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장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한다.

**라.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금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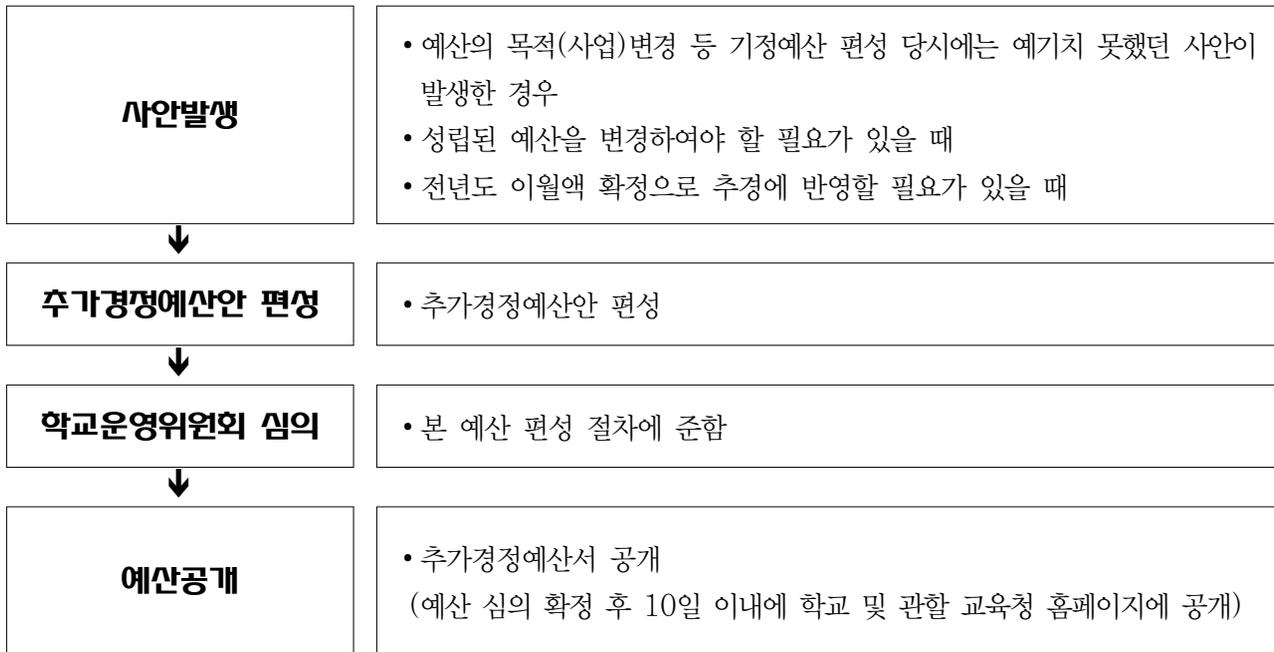
**바. 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안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후 예산을 확정한다.

**사. 예산공개**

학교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관할교육청 홈페이지 지정란에 게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추가경정예산



### 4. 예산의 집행

가.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의 예산 집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3)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 4) 법령 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 다. 성립 전 예산집행

다음 항목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2) 수익자부담경비

##### ❖ 성립 전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말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명시이월비 포함)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집행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에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예산의 이용(移用)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간 경비의 상호사용을 말하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 3) 예산의 전용(轉用)

예산집행 시에 재정여건 변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 4) 예산 전용의 제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나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마.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1)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사고이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 결산

## ○ 결산의 절차

구분	일정	주요내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li> </ul>
↓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li> <li>•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li> </ul>
↓		
결산서 작성	결산서 제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li> <li>• 제출 시 준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 사용명세서,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이월경비내역, 계속비 조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li> </ul> </li> </ul>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4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li> </ul>
↓		
결산 심의·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li> <li>•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li> <li>•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li> </ul>
↓		
결산 보고 및 공개	심의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li> <li>•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li> </ul>

### 가.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 1) 세입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text{징수결정액} = \text{수납액} + \text{불납결손액} + \text{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 2) 세출결산

각각의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사항, 사고이월·명시이월 내역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text{예산현액} = \text{예산액} + \text{예비비 지출액} + \text{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text{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 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 나. 결산서 작성 및 제출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예비비 사용 명세서
- 2)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 3) 계속비 조서
- 4) 명시이월비 명세서, 사고이월비 명세서 및 계속비이월 명세서
-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다. 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재정상태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때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결산심의를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 절차에 준한다.

#### 마.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 1. 예산편성 기본 원칙

- 가. 학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필수 소요액을 확보하되 학생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 나. 각종 회의,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반드시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야 하며 다른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다. 소모성·행사성·선심성 예산 편성은 지양한다.
- 라. 법령(수당규정 및 조례)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마. 단위학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 바.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사.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과 예산액의 조정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한다.
- 아. 부득이하게 명시·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드시 이월처리토록 하여 이월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부적정 처리 사례**

- 교육청에서 학교회계 연도말(1~2월)에 교부한 목적사업비 중 학교여건 상 다음 학년도에 이월 사용이 필요한 예산액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후 다음 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
- ⇒ 학교회계 규정에 맞지 않으며 불용액 비율이 높아짐

**2. 예산편성 과목 체제**

가. 근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나. 예산 과목구분 설정의 의미**

- 1)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 2) 이를 통해 학교재정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임
- 3) 따라서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에 명시된 체제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
- 4)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관계공무원에게는 행정적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3. 세입 예산

#### 가. 이전수입

##### 1) 중앙정부이전수입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지원금은 해당기관에서 소요자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 전 예산집행 가능**

#####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관할청은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한다.
-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4) 기타이전수입

###### 가)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에 납부하는 급식비 등)

###### (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 (가) 학교기업회계전입금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전입금

(나) 학교내 타회계전입금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나) 민간이전수입

(1) 기타지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수입

○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나. 자체수입

1) 학부모부담수입

가) 등록금

(1)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학생 전·출입에 따른 징수 방법은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징수한다.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1분기 시작일까지는 전액을, 1분기 시작일 다음날 이후부터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생회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학생회비를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 2인 이상 동일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인
-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수익자부담수입

- (1)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야 한다.
- (2)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3) 각 사업별로 과목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관리하고, 기타사업은 “기타 수익자부담수입” 목으로 편성·관리한다.

## 2) 지원금수입

### 가)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1) 입학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입학금 지원금
- (2) 수업료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업료 지원금
- (3)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 (4) 급식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 (5)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 (6)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 (7)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8)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금

(9)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금

(10) 기숙사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금

(11) 누리과정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12)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활동비 이외의 학부모부담 지원금

3) 행정활동수입

가) 사용료 및 수수료 : 토지사용료, 시설물사용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의 수입

❖ 매점계약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

-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인계좌 등 학교회계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한 사용료, 실비 등의 징수 금지

나) 자산수입 :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대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다) 적립금처분수입 :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라) 보증금회수 :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마) 기타행정활동수입

(1)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 단,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과목에 계상

(2) 이자수입 :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3)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 다. 기타수입

#### 1) 전년도 이월금

##### 가)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

❖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에 미리 계상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조정하여야 함**

나) 보조금(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교부 당시 사용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다) 이월금

전년도에서 이월된(명시·사고·계속비) 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4. 세출 예산

### 가. 세출예산의 구조

#### 1) 세출 사업예산

1 레 벨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로 단위사업의 묶음</li> <li>• 교육부 설정</li> <li>• 예시 :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등</li> </ul>
2 레 벨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사업 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li> <li>• 교육부 설정</li> <li>• 예시 : 교직원기타보수,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li> </ul>
3 레 벨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영하는 최소단위의 사업</li> <li>• P.59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을 참고하여 세부사업을 단위학교별로 자율 설정 <b>단,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에 속하는 세부사업명은 전국 공통 사항</b> <b>이므로 반드시 표준안 세부사업명으로 편성</b></li> <li>• 예시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맞춤형복지 등</li> </ul>

2) 세출 성질비목 【목-세목-원가통계비목(회계과목)】

A00	인건비	• 교원연구비(직책연구비), 제수당, 기타직 보수 등
B00	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적 교육성 경비
C00	자산취득비	•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 경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목적사업비(국고) 반환 경비

나. 세출예산

1) 인적자원 운용

가) 교직원기타보수

교원연구비(학생지도연구비, 직책연구비), 제수당, 기간제 교원 및 정규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급여 등

▣ 교원연구비(초등학교는 해당 없음)

① 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포함) 교원에게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호 봉 별	37호봉 이상	36~28호봉	27~18호봉	17호봉 이하
기 준 액	55,000	52,000	48,000	45,000

② 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포함) 교원에게는 월 15,000원 범위 내에서 학생지도연구비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학교 급별로 최하 연구비를 지급한다.

④ 분만교사의 특별휴가 중에는 분만교사와 대치강사에게 각각 연구비를 지급한다.

- ⑤ 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포함) 교원에게는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구 분	교 장	교 감	부 장	담 임
기 준 액	35,000	25,000	10,000	5,000

- ⑥ 특수학교 초등교원에게는 중·고등학교 교원에 준하여 교원연구비·학생지도연구비·직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보전수당가산금을 차감한 차액으로 지급한다.

#### ▣ 제수당(초·중학교는 해당 없음)

- ① 관리(사무)수당

(단위 : 월액/원)

직급 \ 구분	중·고등학교	비 고
행 정 실 장(5급)	67,000	
행 정 실 장(6급 이하)	60,000	
행 정 · 기능직(6, 7급)	60,000	
행 정 · 기능직(8, 9, 10급)	42,000	
학교회계(구 학부모회)직원	22,000	

- ❖ 단, 중학교 학교회계(구 학부모회)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하며, 중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

- ② 겸직수당 : 야간부 설치학교의 겸직자에 한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직급 \ 구분	인원수	금 액	비 고
교 장	1	30,000	부장의 겸직수당은 실겸직자에 한함
교감·행정실장(5급)	2	22,000	
부장·행정실장(6급 이하)		15,000	
사 무 직	2	13,000	

## ▣ 준용사항

징계처분, 신분변동 등에 의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① 파면·해임·면직·퇴직·복직·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정직·직위해제·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또는 파견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연수 또는 교육목적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학생지도연구비 제외)

③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의 연구비 및 제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교원연구비 등을 이중 지급할 수 없다.

### 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 직무연수, 자격연수, 자율연수, 수석교사제 운영 등
-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제 사업비
  - 교직원체육행사, 퇴임식행사, 교직원문화행사 등
- 맞춤형 복지비 지원 사업비

###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가) 급식관리

급식종사자 인건비, 급식식품비, 급식운영비, 우유급식운영 등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및 급식시설관리, 위탁급식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나) 기숙사관리 :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 사업비

#### 다) 보건관리

-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일반 운영 제 사업비

## 라)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제 사업비로 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등
-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및 기타 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마) 학생 장학 지원 : 내부, 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 바)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 졸업앨범 제작, 학생교과서 구입 등 학생복지 서비스 제 사업비

## 3)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가) 교과활동

-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 각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 되는 제 사업비
- 전문 교육과정 운영,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과학실험보조원, 영어 보조교사, 인턴 교사 운영 등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

## 나) 창의적 체험활동

-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 ❖ **학생자치회비는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집행**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 동아리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등 학생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진로지도활동, 수능후 프로그램운영, 생활진로지도 상담프로그램 등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4)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등 표준교육 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과외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 교수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
-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제 사업비

나) 평생교육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제 사업비

다) 직업교육 : 정규 교육과정 외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산업학교 등에 학생교육을 위탁하는 학교에서는 위탁학생 1인당 100,000원을 학년 초 (3월 중)에 위탁학교로 진출한다.

(위탁학생의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위탁 학생수만큼 진출)

라) 국제교육 :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마) 독서활동 : 도서구입, 도서관(실)운영, 교원독서 교육 제 사업비

바) 교기육성 : 학교 운동부,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사)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 영재교육 운영, 위탁교육 등 기타 선택적 교육 운영 제 사업비

❖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정산, 사업추진 내역 공개

타 비목과의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고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의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거나 학생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처리)

5)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제 사업비

가) 교무업무 운영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무(교육)업무 보조원 운영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 나) 생활지도 운영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교내외 학생 생활 지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 역량제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학교폭력대책에 소요되는 제경비

## 다) 연구학교 운영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 라) 학습지원실 운영 : 방송실, 상담실, 공동실습소, 정보화실 등 교수-학습 지원실 운영 제 사업비

## 마) 교육여건 개선

- 책·결상구입 및 교체, 사물함 교체, 칠판수리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교구) 확충 및 교체
- 노후PC 교체, TV 교체, 빔프로젝트 구입 등 교단선진화 제 사업비
- 도서관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등 교육관련 시설 확충비

## 6)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가) 부서 기본 운영 : 학교기관 운영을 위한 부서의 기본 운영 제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병설유치원 운영 등을 계상

## 나) 시설 장비 유지 :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다) 일반행정 관리 :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 사업비로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구 학부모회직원 및 행정보조요원 등), 행정사무관리비, 행정 자산관리비를 위한 제 사업비

## ❖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한 금액 계상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학교 외에 교육감 소속의 다른 학교(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아니함

##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 ①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기획인적자원과-755, 2004. 6. 22.』 참조
  - ❖ 2004. 7월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호봉제 채용 금지
- ② 각급학교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정규직 및 학교회계직원 통합 운영 방안 및 인력관리 기준 『행정관리과-3820, 2007. 9. 27.』 참조
- ③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행정관리과-공개자료실(168번), 2013. 9. 23.』 참조
- ④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정원 기준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등학교만 해당)
  - 학급 감축 등으로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연 감소될 때까지 현재의 인원을 인정하되, 신설학교 등 신규인력이 필요한 학교로 교류를 적극 추진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직원이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충원을 금지한다.

#### 【 학교회계(구 학부모회)직원 정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18학급이하	19 ~ 36학급	37학급이상	비 고
고등학교	1	2	3	

❖ 학급수는 특수학급, 야간학급, 산업체특별학급, 방송통신고 학급을 포함한다.

###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제외)

- ① 학교회계직원 3대 직종(교무·실협·전산) 재배치 운영계획 알림
  - 『혁신복지담당관-3037, 2006. 8. 21.』 참조
    - 3대 직종 결원 발생 시 신규채용을 금지토록 하고 결원 발생이 없는 학교는 현행 체제 유지
    - 3대 직종 통합운영 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65일 근무형태(교육실무원)로 전환
- ② 각급학교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 정규직 및 학교회계직원 통합 운영 방안 및 인력관리 기준 『행정관리과-3820, 2007. 9. 27.』 참조

## ③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행정관리과-공개자료실(168번), 2013. 9. 23.』 참조

## ④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학교회계직원 3대직종 :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정원 기준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 학교회계직원 3대 직종 외 급식, 업무 보조 등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일용직, 3개월이내)를 채용할 수 있다.

## 【 3대 직종(교무, 과학, 전산) 배치 기준 】

구 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특수)학교	비 고
인 원	1	2	1	유치원은 공립만 해당

## ▣ 퇴직금

## ① 대상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및 비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금 산정방법

## ○ 퇴직금 산정공식 ○

$$\begin{aligned}
 \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 30일분} \times \text{계속근로년수} \\
 &= 1\text{일평균임금} \times 30\text{일분} \times \left( \text{○년} + \frac{1\text{년미만기간의일수}}{365} \right)
 \end{aligned}$$

## ○ 평균임금 30일분

$$= (\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div \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times 30\text{일}$$

##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times 3/12)$$

## ○ 월정임금

-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 학부모회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학부모회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비월정임금이나 퇴직금 계산시 실제지급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학부모회직원의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 ❖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는 제외
- 퇴직 시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평균 임금 산정에는 해당 월 퇴직일 이전까지의 일할 계산한 임금만을 포함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한다.
-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보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총소요액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④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됨)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2012. 7. 26.부터 시행)

라) 학교운영 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유관기관협력 :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 유관기관의 범위 : 감사담당관-2850(2011. 5. 13.) 참조

마) 학부모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7)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입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로 호우긴급피해 복구공사, 조경공사, 교실 증·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비

8)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가) 반환금 : 전년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나)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편성 시 준수사항** ●●●

☞ 해당되는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하기 바람

① 업무추진비의 계상 범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교직원협의회, 주요행사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수준으로 계상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

(단위 : 천원)

학교당 단가				학급당 단가 (1학급당)	교직원당 단가 (1인당)
유치원(단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1,500	3,000	4,000	5,000	60	80

❖ 교직원 수

- 정규직 현원
- 기간제 교원, 민간인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단, 주 40시간 이상, 1년 이상)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한 자)

- 기준일자 : 2014. 3. 1

❖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육청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목적사업비내의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 인건비성 경비, 자산취득성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편성
- 단, 법령이나 타기관 등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③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

○ 매월 250,000원

각급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VI 행정 사항

### 1. 단위학교별 연수 실시

각급 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예산요구서를 다양하게 제출 받아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구성

#### 가. 성격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 및 사정작업을 하고 예산편성안 확정

#### 나. 역할

- 1)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별·개인별 예산 요구안 조정 및 사정
- 2)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검토
- 3)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다. 구성(안)**

- 1) 자격 : 해당학교 소속으로 재정에 전문적 식견과 관심이 있어 참여하고자 하는 교직원
  - 2) 범위 : 5~11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 3) 당연직 : 학교장, 행정실장
  - 4) 위원장 : 학교장
  - 5) 일반교사의 비율 :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위원 수의 30% 이상
- ❖ 학교 규모, 교직원 전체 합의 등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

**라. 교직원 의견청취**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예·결산소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소위원회 설치)에 따라 구성

**4.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가. 사업별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의 사업 추진 내역을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

**나.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 강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 구매내역을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다. 물품구매 계약 및 검수 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

- 1) 계약 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하기 전에 해당교사의 의견 수렴
- 2) 검수 시 : 행정실 구매담당자와 해당교사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 라.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직원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 1) 수익자부담사업(현장체험학습 등) 추진 시 학교관계자(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
- 2)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239(2008. 10. 10.)
  - 2013 현장체험학습 표준매뉴얼(학교폭력근절과-939, 2013. 3. 28)
    - 시교육청홈페이지 학교폭력근절과 공개자료실 129번 게시

- ❖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 지급 시 업체에 일괄 송금한다.
- ❖ 일비는 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 지급하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에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5.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각급학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기초를 포함한 예·결산서와 예산집행 사항을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등·특수학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예·결산서 공개방에 게시토록 한다.

## 6.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집행

가. 단위학교의 사업은 해당 연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은 지양한다.

나. 단위학교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행정실과 교무실 단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의하도록 한다.

다. 시설관리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라. 운전원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한 특근매식이 제공되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의 불가피성을 확인하여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운전원 외에도 각급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

마. 교직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직무연수 훈련여비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

## 7. 예산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예산의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한다.

나. 세입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

❖ **다만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산출기초를 적의 조정(산출기초를 “절상” 등)하여 편성**

다. 산출기초는 순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산출기초 순서 : 단(개)원×물량(명, 부, 개 등)×회수(월, 일, 회 등)**

## 8. 결산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결산서 제출 시 불용액 명세서 제출

나. **순세계잉여금(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책임성 제고**

- 1) 회계연도말 학교회계 집행잔액의 과다이월은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적정한 연간 예산 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할 것임
- 2)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기준액 10% 초과 시 사유서 제출 및 학교운영비 감액 검토

### 《학교회계 세입기준액(①~④ 합계)》

- |                     |              |
|---------------------|--------------|
| ① 원가통계비(목) 학교운영비전입금 | ② 목) 학교운영지원비 |
| ③ 관) 행정활동수입         | ④ 목) 순세계잉여금  |

## 9.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교육부, KEDI 주관]

가. 201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부터 시행

나. 학교 재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회계 제도 및 재정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뒷받침

다.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입 및 세출 주요 항목 분석 지표 개발 ⇒ 학교특성별 다각적 비교 분석

라. 단위학교에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분석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구조 및 과목 체계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NEIS 및 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학교정보 현행화

- 학교에서는 학사정보 및 인력정보(계약직교원, 학교회계직원 직종, 급여 등) 입력사항 수시 확인

## 10.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가. 목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며, 지원기관(부서)에서 교부금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단, 100만원 미만 또는 10% 미만의 집행잔액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업무추진비 제외)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기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처리

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기본적 교육활동비로 사용할 경우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집행 : 집행잔액에 대한 본래의 사업목적, 당초 교부액, 목적달성여부 및 집행잔액 발생원인 등 기재

## 11. 기타 유의 사항

가. 학교예산 편성 등 학교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는 관할청 홈페이지에 탑재

❖ 고/특수 : 시교육청(정책기획관), 유/초/중 : 교육지원청(지역사회협력과)

- 1) 예산편성 단위단가 및 관련 법령
- 2)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반영사업” 및 “학교운영비로 실정에 맞게 예산 반영할 사업” 내역

나.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620목) 편성사업 중 목적사업비(620-03) 대상학교를 조기 선정하여 각급학교의 예산편성 전(2013년 1월 중) 내시액 통보

-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 중 통보 지양

## 제2장

#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 I 기본방향

1. 합리적인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으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과 교육 목적에 맞게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2.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의 활성화와 역동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근간을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환
3.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접교육비 확보로 공교육 활성화 도모
4.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마련
5.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사업비의 통합배분 확대
6.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가. 교직원이 고루 참여한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내실화
  - 나. 학교 예·결산 및 수익자부담경비 공개로 투명성 제고

## II 2014년도 학교운영비 주요 지원 기준

### 1. 기본운영비(학교·학급·학생당 경비)

#### 가. 학교당 경비

(단위 : 천원)

급별 학급수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통합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상업	공업	기타	일반고	특수 목적고		
6학급 이하	141,370	117,742	121,571	161,184	114,658	197,359	193,691	178,529	216,075	154,917	130,613
7~12	143,654	120,520	124,387	169,796	118,604	202,757	197,779	184,436	222,429	158,434	134,060
13~18	145,938	123,298	127,203	172,408	123,350	208,355	202,966	187,344	231,282	161,751	137,507
19~24	148,222	125,389	129,967	186,020	131,296	216,053	212,254	190,251	241,136	177,168	147,438
25~30	150,506	129,037	132,935	197,634	136,981	225,275	223,054	193,858	251,781	189,911	154,864
31~36	155,256	131,952	134,205	208,545	145,066	235,387	232,954	198,201	255,416	201,887	164,252
37~42	165,055	134,612	136,751	220,339	160,157	253,736	249,637	203,243	271,991	213,500	184,590
43~48	172,843		138,901		174,492	271,141	265,502			231,474	
49학급 이상	175,246										

- 전년대비 2.1%인상 조정(초·중·일반고·기타학교)

#### ❖ 24학급 이하 조정 경비 추가 지원

(단위 : 천원)

급 별 학급수	초등학교, 특수학교, 특성화(공업, 기타)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상업), 각종학교	비 고
6학급 이하	7,200	6,500	특수목적고, 통합고 제외
7~12학급	5,100	4,000	
13~18학급	3,000	1,500	
19~24학급	900	500	

## 나. 학급당 경비

(단위 : 천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상업	공업	기타	일반고	특목고		
2,192	1,920	1,778	2,843	1,990	2,114	2,077	2,986	3,409	2,449	2,234

## 다. 학생당 경비

(단위 : 천원)

학급수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상업	공업	기타	일반고	특목고		
18학급 이하	40	29	27	40	34	49	39	41	47	56	34
19~24학급	37	26	24		31	35	34	39			31
25학급 이상	34										

## 라. 유치원 원당·급당·학생당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학급수	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단 설	3학급 이하	47,809	7,746	74
	4~6학급	48,955		
	7~9학급	50,101		
	10~12학급	51,247		
병 설	1학급	4,602		
	2학급	4,704		
	3학급	4,806		
	4학급	4,908		
	5학급	5,010		

## 2. 건물유지비

(단위 : 천원)

건물총면적		면적단가	경과연수별 적용지수														
3,000㎡ 미만		4,000	<table border="1"> <tr> <th>건물경과연수</th> <th>적용지수</th> </tr> <tr> <td>5년 이하</td> <td>0.6</td> </tr> <tr> <td>6년~10년</td> <td>0.7</td> </tr> <tr> <td>11년~15년</td> <td>0.8</td> </tr> <tr> <td>16년~20년</td> <td>0.9</td> </tr> <tr> <td>21년~25년</td> <td>1.0</td> </tr> <tr> <td>25년 초과</td> <td>1.1</td> </tr> </table>	건물경과연수	적용지수	5년 이하	0.6	6년~10년	0.7	11년~15년	0.8	16년~20년	0.9	21년~25년	1.0	25년 초과	1.1
건물경과연수	적용지수																
5년 이하	0.6																
6년~10년	0.7																
11년~15년	0.8																
16년~20년	0.9																
21년~25년	1.0																
25년 초과	1.1																
3,000㎡ 이상	4,000㎡ 미만	5,000															
4,000㎡ 이상	5,000㎡ 미만	6,000															
5,000㎡ 이상	6,000㎡ 미만	7,000															
6,000㎡ 이상	7,000㎡ 미만	8,000															
<hr/>																	
31,000㎡ 이상	32,000㎡ 미만	33,000															
32,000㎡ 이상	33,000㎡ 미만	34,000															
33,000㎡ 이상	34,000㎡ 미만	35,000															
34,000㎡ 이상		36,000															

(예시) 12년된 A건물(4,200㎡)과 23년된 B건물(1,900㎡)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구분	건물면적	건물면적비율 (1)	면적금액(2) = 해당 면적단가×(1)	경과 연수	경과연수별 적용지수(3)	지원액 (2)×(3)
A건물	4,200㎡	68.9%	5,512	12년	0.8	4,410
B건물	1,900㎡	31.1%	2,488	23년	1.0	2,488
합계	6,100㎡	100%	8,000	-	-	6,898

### ※ 참고사항

- ▷ 34,000㎡ 이상은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면적단가는 동일함
- ▷ BTL 사업시행 학교 : 미지원
- ▷ 신설 또는 개축 건물 : 개교(개축) 3차연도부터 지원

## 3. 체육관 및 강당관리비

(단위 : 천원)

경과연수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2000㎡ 미만	2000㎡ 이상
5년 이하	1,683	1,881	2,079	2,376
6년~10년	1,870	2,090	2,310	2,640
11년~15년	2,057	2,299	2,541	2,904
16년 초과	2,244	2,508	2,772	3,168

#### 4. 냉·난방 전기료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특수각종학교
	병설	단설				
교 당	-	2,588	5,175	5,175	6,210	5,382
급 당	466	404	404	435	538	497

- 전기요금 인상 및 냉·난방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교·급당 3.5% 인상

#### 5. 신설학교 개교경비

##### 가. 유치원

(단위 : 천원)

병 설		단 설		
3학급 이하	4~5학급	5학급 이하	6~8학급	9~11학급
82,9092	84,408	111,140	115,884	120,988

##### 나. 초·중·고·특수학교

(단위 : 천원)

학교급	18학급 이하	19~24학급	25~30학급	31~36학급
초	196,482	207,738	218,634	229,890
중	209,458	224,010	238,922	253,474
고	217,954	233,394	248,834	264,274
특수	216,538	231,978	247,418	262,858

- ▷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별 학급수, 교직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 개교행사비, 환경정리, 교직원 비품, 행정장비 구입, 교구구입비 지원

#### 6.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단위 : 천원)

실 명	지 원 액	실 명	지 원 액	실 명	지 원 액
미 술 실	15,000	가 사 실	15,000	보통교실(신·중설)	2,000
음 악 실	15,000	무 용 실	3,000	유치원학급(신·중설)	7,000
과 학 실	20,000	시 청 각 실	18,000	교 원 편 의 시 설	4,000
기 술 실	15,000	어 학 실	25,000	상 답 실	5,000
도 서 실	37,000	유 회 ( 놀 이 ) 실	25,000	보 건 실	8,000
실 습 실	10,000	컴 퓨 터 실	17,000	회 의 실	6,000
방 송 실	10,000	다 목 적 실	13,000		
예 절 실	6,000	교사(교재)연구실	5,000		

## 7. 차량운영비

(단위 : 천원)

연간주행거리		5,000km 이상	10,000km 이상	15,000km 이상	20,000km 이상	25,000km 이상	비고
승 합	대 형 36인승 이상	5,187	6,974	8,763	10,551	12,341	경유
	중 형 16~35인승	2,724	3,739	4,860	5,981	7,104	
	소 형 11~15인승	2,617	3,234	3,743	4,253	4,763	
화 물	대 형 5톤 초과	7,228	9,121	11,017	12,911	14,806	경유
	중 형 1~5톤	3,962	4,876	5,788	6,702	7,615	
	소 형 1톤 이하	3,078	3,587	4,098	4,607	5,116	
	소 형 1톤 이하	3,515	4,572	5,627	6,683	7,739	휘발유
1) 5,000km 미만의 경우 · 2,000km 이상 ~ 5,000km 미만 : 5,000km 이상 운영비의 2/3 지원 · 2,000km 미만 : 5,000km 이상 운영비의 1/2 지원 2) 특수학교 : 차량보조원 인건비 지원 ※ 단, 임대차량은 실 소요액 지원							

## 8. 교무(교육), 과학, 전산 보조원 인건비 : 2013년 대비 1.7% 인상

## 9. 인터넷통신비 : 학교별 4,931천원

## 10. 당직제도 개선비

- 공립초 : 20,604천원(2013년) → 20,688천원(84천원 인상)

※ 학교 자체예산 확보액 1,200천원은 제외된 금액임

## 11. 학생건강검진비

- 검진대상 :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고·특수학교 1학년 전원  
(단, 초등학교 2, 3, 5, 6학년까지 구강검진비 포함)
- ※ 건강검진비 단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적용(2014년도 단가는 추후 고시)

## 12. 벽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 벽지 초등학교 급식비(447천원) : 천가초
  - 과목조정 : 447천원(2013년) → 522천원(2014년)
  - ※ 변경내역 : 2013년 급식비 2,400원+우수농산물(목적사업비) 700원=3,100원  
2014년 급식비 2,760원+우수농산물(목적사업비) 340원=3,100원
- 특수학교 급식비(538천원)
  - 인상분 반영 511천원(2013년) → 538천원(27천원 인상)
  - ※ 인상사유 : 물가상승률 반영

## 13. 학교안전공제회비

- 1인당 유 1,500원, 초 2,120원, 중 4,440원, 고/특/기타/교육활동참가자 5,470원

## 14.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보전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위헌 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보전
- 기본 : 204,360원(월 17,030원) × 학생수(2014. 3. 1. 기준)
- 추가 : 기본지원 총액의 80%를 초과하는 인건비 추가 지원

## 15.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시행학교 학교운영비 조정

- BTL 사업에 의해 신축 또는 개축된 학교는 민간사업자와 협약 시 포함되는 투자부분 중 학교운영비 구성내역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학교 간 형평성 제고
- 특별실 내부비품비, 건물유지비, 체육관 및 강당관리비, 당직경비용역, 전기·소방시설 관리용역비 등 미지원

### Ⅲ 통합사업운영비(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총액배분하는 사업)

❖ 상세내용은 [2014년도 학교회계 예산반영사업] 참조

연번	부서명	사업명	유	초	중	고 (통합중고)	특수	기타
1	창의교육 과정과	부산국제고등학교 지원				○		
2		부산디자인고 특수목적고 전환 운영 지원				○		
3		창의적 체험활동		○	○	○		
4		독서교육활성화 지원(NIE활성화 지원)		○	○	○		
5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	○			
6	교수학습기 획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		
7		기숙형고교 운영프로그램 지원				○		
8	유아특수복 지과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	○	○	○		
9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	
10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	○	○	○	○	
11		특수학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12		신설 특수학교 통학차량운행지원					○	
13		시각장애학교 점자교과서 대금					○	
14		방과후 전담인력 운영		○	○	○		
15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				
16		초등돌봄교실 운영					○	
17		특수학교 차량임차료					○	
18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발 평가		○	○	○	○	○
19	과학직업 정보과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	○			
20		전산실무원 인건비		○	○	○	○	○
21		교육정보 인프라 사업비	○	○	○	○	○	○
22		학생용 버스 운영비 지원				○		
23		동래원예고 금성학습원 운영지원				○		
24		발명교실 운영		○	○			
25		신설교 과학교구 확충		○	○	○		
26		영재교육원 운영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유	초	중	고 (통합중고)	특수	기타
27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영농학생전진대회 훈련 지원				○		
28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		
29		직업교육박람회 작품전운영비 지원				○		
30		공동실습소 운영지원				○		
31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	○			
32		글로벌학교 운영				○		
33	평 생 교 육 체 육 과	학생 건강검진비 지원		○	○	○	○	
34		벽지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			○	
35		직영급식학교 급식시설 유지보수비		○	○	○	○	
36		운동부 육성학교 운영비 보전		○	○	○		
37		청소용역비		○			○	
38		학교 급식차량 운영 지원		○	○			
39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운영지원(고)				○		
40		경기지도자인건비		○	○	○		
41	학 교 폭 력 근 절 과	배움터지킴이운영		○	○	○	○	○
42		초등CCTV통합관리센터설치		○				
43		안전드리머 활동 지원		○	○	○		○
44		학교안전공제회비	○	○	○	○	○	○
45		학교폭력예방교육		○	○	○	○	○
46	총 무 과	당직제도 개선비		○				
47		학교차량 구입비					○	
48	행 정 관 리 과	인터넷통신비		○	○	○	○	○
49		교무(교육)실무원 인건비	○	○	○	○	○	○
50		인력관리효율화 인센티브 지원			○	○		
51		장애인 자립 행복 일자리 사업					○	
52		장애인 의무고용 인건비		○	○	○		
53	교육지원과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					
54	교육시설과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비				○		

❖ 『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총액배분하는 사업』은 교육청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집행



## 제3장

#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





## 1.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등에서 교부하는 수입은 기타지원금에 편성)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경비
				광역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광역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 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하는 사업 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급식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가 진출하는 전입금 (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및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 타회계전입금(같은학교세입세출외 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A4300	민간이전수입	
			A4301	기타지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b>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b>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b>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b>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3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없음)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교직원 급식비(직영급식에 한함)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 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금
			B1203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비	<b>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b>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6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 제작, 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7 교과서대금	교과서대금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8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B1210 누리과정비</b>	<b>누리과정비</b>	<b>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b>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B2102 방과후학교활동 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 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B2103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수입	<b>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b>
			<b>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b>	<b>입학금지원금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입학금 지원금</b>
			<b>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b>	<b>수업료지원금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업료 지원금</b>
			<b>B2106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수입</b>	<b>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금</b>
			<b>B2107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수입</b>	<b>현장체험학습지원금 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 체험학습 지원금</b>
			<b>B2108 청소년단체활동 지원금수입</b>	<b>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 단체활동지원금 지원금</b>
			<b>B2109 졸업앨범대금 지원금수입</b>	<b>졸업앨범대금지원금 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 앨범대금 지원금</b>
			<b>B2110 교과서대금 지원금수입</b>	<b>교과서대금지원금 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 대금 지원금</b>
			<b>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b>	<b>기숙사지원금수입</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금</b>
			<b>B2112 누리과정지원</b>	<b>누리과정지원</b>	<b>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b>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b>학교시설을 포함한</b>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입찰참가신청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월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B3502	이자수입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 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C1200	보조금사용잔액		
		C1201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2.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 가.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구분

- ※ 2014학년도 세부사업명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며, 세부항목은 가급적 사업해설에 예시된 사업(★표시)으로 예산을 구성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세부항목을 세부사업명으로 사용 가능  
단,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에 속하는 세부사업명은 전국 공통 활용사항이므로 반드시 권장 세부사업명으로 편성
- ※ 세부사업의 경우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책단위사업에 연계하여 학교의 규모 및 교육과정 등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 및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해설의 성격으로 실제 예산편성 시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 기울임체 부분은 전년대비 변경된 내용 표시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대체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교직원기타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행정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행정대체인력인건비 등)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제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재원 수당(★교원(기간제 교원), 행정직, 학교회계직 등)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교직원(비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교원연수, 행정직연수, 연구수업운영, 수석교사제운영 등)
		교직원복지	○교직원(비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이전비, 동호회지원, 교직원체육행사, 퇴임식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등)
		맞춤형복지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맞춤형 복지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조리사및조리원대체인건비, 급식식품비, 급식운영비, 우유급식운영 등) ○급식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기구확충비, 급식시설개선및유지관리)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위탁급식운영	○위탁급식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운영위탁급식, 운반위탁급식 등)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사감인건비, 기숙사운영비 등)
	보건관리		
		학생안전관리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 사업비 (★학교안전공제회관리, 응급학생후송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학습 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학교방역관리 등)
		학생건강관리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학생건강검사, 교의수당 등)
		보건실운영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약품구입, 보건실일반운영 등)
	교육격차해소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비 (★무상급식,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기타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비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 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저소득층자녀현장체험학습지원, 특수교육대상자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비 (★저소득층자녀청소년단체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청소년단체활동지원)
		졸업앨범대금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비 (★저소득층자녀졸업앨범대금지원, 특수교육대상자졸업앨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비 (★저소득층자녀교과서대금지원, 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비 (★저소득층자녀기숙사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통신비 등 지원비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컴퓨터구입비지원)
		누리과정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제 사업비 (★유치원누리과정지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기타교육격차해소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기타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	
		학생장학금지원	○내부, 외부 학생장학금 지원 사업비 (★장학금지원 등)
		기타학생복지서비스	
		졸업앨범제작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졸업앨범제작 등)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학생교과서구입 등) ※교사용교과서(지도서) 구입은 [단위사업:교과활동]에 편성
		기타학생복지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차량운영비, 통학버스 운전기사·안내원 인건비 등), 학교 매점 관리(직영), 학생증제작 등 기타 학생 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 등)
		기본적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제 사업비 (★교수학습지원, 보결(대상)수업관리, 교사용지도서 구입, 학습준비물 지원, 학급운영비, 환경정리활동 등)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 운영 등)
		사회(역사, 도덕)교과활동	○사회(역사, 도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등)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등)
		과학(실과, 기술, 가정)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 가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등)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등)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
		예술(음악, 미술)교과활동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등)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원어민보조교사운영, 외국어강사, 인턴교사제운영 등)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인턴교사제운영 등)
		진로교육교과활동	○진로 관련 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인턴교사제운영 등)
		학력신장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학력 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전문교과활동	○기계, 전자, 자동차, 토목, 원예 등 특성화고 전문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등)
		기타교과활동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운영, 재량활동, 교과협의회운영 등)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 평가,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고아원봉사, 양로원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등)
		진로활동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선택적교육활동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학부모코디네이터 등)
		기타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토요일스포츠강사 운영 등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보육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토요일스포츠활동 등)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평생교육운영 등)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산학협력연계교육, 직업교육운영 등)
		학교기업지원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에 지원하는 경비 (★학교기업지원)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등)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실운영, 사서보조원인건비)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 (★축구부 운영, 야구부 운영, 수영부 운영 등)
		기악부운영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기악부운영 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등 위에 제시하지 않은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영재교육운영, 학학협력연계교육, 외국어캠프 등)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등 학생의 학원위탁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위탁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육(교무전담)보조원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b>입학식 및 졸업식</b> 등]
		교육과정평가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간접비 (★교육과정평가 등)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학교폭력대책에 소요되는 제 경비 (★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 생활지도여비, 생활지도실운영, 배움터 지킴이운영, 녹색어머니회,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안전한 학교환경구축 등)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교과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등)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운영 제 사업비(★방송실운영 등)
		학교상담실운영	○ <b>상담실 운영 제 사업비,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실 (Wee 클래스), 진로진학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b> (★상담실운영, 상담요원인건비, <b>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치유 프로그램운영비</b> 등)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운영 제 사업비 (★정보화실운영, 전산보조원인건비 등)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 등)
		기타학습지원실운영	○기타학습지원실 운영 제 사업비 (★생활관, 예절실, 학습자료실, 교과연구실, 학년부실운영 등)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책걸상구입, 사물함교체, 칠판교체, 교실소규모수선 등)
		교단선진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제 사업비 (★노후PC교체, TV교체, 빔프로젝트구입 등)
		과학실현대화	○과학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현대화 사업(★과학실 현대화)
		도서실현대화	○도서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현대화 사업(★도서실 현대화)
		행정실현대화	○행정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현대화 사업(★행정실 현대화)
		학교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부서기본운영	
		부서기본운영	○각 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운영비 등을 계상 (★교장실 운영, 행정실 운영, 교무실 운영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등)
		병설유치원운영	○병설유치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유치원교과활동, 유치원 행사, 유치원운영 등)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 및 소규모 수선 등 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시설확충및개선]에 편성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당직관리, 시설관리용역료, 시설일반관리비, 폐기물처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다목적실관리 등)

정책	단위	세부사업(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일반행정관리	
		행정지원인력운영	○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 학교회계직원인건비, 행정보조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사무관리	○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사무용품구입, 업무용도서구입, 간행물구독, 재정보증수수료, 사무용기기관리 등)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등)
		유관기관협력	○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 지역발전협의회운영, 관내기관체육대회 등)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b>학부모시험감독운영</b> 등)
		학교시설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등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 호우긴급피해복구공사, 조경공사, 교실 증개축, 적립금 등)
		학교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 전년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예비비)

**나. 학교회계 세출 예산과목**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2 기타직보수	A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A100202	<b>학교직원인건비</b>	공무원(정규직 교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근로자)(퇴직급여 포함)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01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게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퇴직급여 포함)
	A10-04 학교운영지원비수당	A100401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수당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B10010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급식소모품비, 일반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수수료, 임차료 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b>교육경비 등</b>
		B100102	운영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보충수업, 방과후학교업무(수납·지출·인쇄)수당, 교의수당 등 운영수당, <b>배움터지킴이활동비</b>
		B100103	전기요금	전기요금
		B100104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B100105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B100106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B100107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B100108	우유대금	급식용우유대금
		B100109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B100110	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B100111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는 제외한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등 교직원복지비
	B10-02 교육운영비	B100201	교육운영비	교구·기자재구입( <b>자산성 물품은 비품구입비 목에 편성</b> )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b>학생여비</b> , 학교행사비, 학생대회 출전비, 도서관운영비, <b>학급교육활동경비</b> 등
		B100202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B100203	학생복지비	저소득층학생 지원비, 급식지원비 등의 지원금 및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B10-03 법정부담금	B100302	기타직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
		B100303	기간제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
<b>B20 업무추진비</b>				
	B20-01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b>B20-02</b> <b>직책급업무추진비</b>	<b>B200102</b>	<b>직책급업무추진비</b>	<b>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책으로 지급하는 경비</b>
<b>C00 자산취득비</b>				
<b>C10 시설비</b>				
	C10-01 시설비	C100101	시설비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C100102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b>C20 비품구입비</b>				
	C20-01 비품구입비	C200101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C200202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b>C30 적립금</b>				
	C30-01 적립금	C300101	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b>C40 기타자산취득비</b>				
	<b>C40-01</b> <b>기타자산취득비</b>	<b>C400101</b>	<b>기타자산취득비</b>	<b>수목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기타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 취득비</b>
<b>D00 예비비및기타</b>				
<b>D10 예비비및기타</b>				
	D10-01 예비비	D1001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D10-02 반환금	D100201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D10-03 전출금	D100301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다. 세출예산 사업구분 표준안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인적자원운용					
		교직원기타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계약직교원인건비	인건비 퇴직급여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건강보험기관부담금, 산재보험기관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행정대체인력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퇴직급여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기간제교원)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행정직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관리(사무)수당
			학교회계직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관리(사무)수당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교원연수	여비	여비
				일반수용비	교육등록비
			행정직연수	여비	여비
				일반수용비	방화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및기타교육등록비
			수석교사제운영	여비	여비
			연구수업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여비	여비
		교직원복지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복지비	상품구입 행사용품구입
				일반업무추진비	식비
			퇴임식행사	일반업무추진비	식비
			교직원문화행사	여비	여비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 맞춤형 복지비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영양사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조리사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조리원인건비(교특재원)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조리원인건비 (수익자부담재원)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조리사및조리원대체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급식식품비	급식용식재료비	식품비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식소모품구입비
					도시가스정기검사
					음식물처리비
					정부미운임료
				교육운영비	시상품 구입
				여비	여비(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기타공공요금	가스책임배상보험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연료비	연료비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우유급식운영	우유대금	우유비
			급식시설개선및유지관리	일반수용비	급식시설수선비
					보일러세관및수리
					급식시설보수물품구입
					방역소독비
				시설비	급식실캐노피설치
					급식시설비
			급식기구확충비	비품구입비	급식기구구입비
		위탁급식운영			
			운영위탁급식	급식용식재료비	운영위탁급식비
			운반위탁급식	급식용식재료비	운반위탁급식비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사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숙사운영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일반수용비	세탁비	
				시설물유지관리비	
				기숙사운영소모품구입	
				청소용역비	
			연료비	연료비	
		비품구입비	기기 및 집기 구입비		
		보건관리			
		학생안전관리			
			응급학생후송	학생복지비	부상학생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관리	학생복지비	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학생복지비	수질검사료	
				정수기관리비	
				저수조청소비	
		공기질측정	학생복지비	공기질및소음측정	
				공기청정기위탁관리수수료	
		학교방역관리	학생복지비	교내방역소독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학생건강관리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건강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만도검사
		교의수당		운영수당	교의수당
		보건실운영			
			약품구입	학생복지비	약품구입
					소모성의료기구구입
			보건실일반운영	학생복지비	침구구입
					침구세탁비
		교육격차해소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학생복지비	학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학비지원	학생복지비	방과후학교지원
		급식비지원			
			무상급식	학생복지비	무상급식비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 학교교육비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 학교교육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저소득층자녀현장체험 학습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지원
			특수교육대상자현장체험 학습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저소득층자녀청소년단체 활동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청소년 단체활동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졸업앨범대금지원			
			저소득층자녀졸업앨범 대금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졸업앨범대금지원
			특수교육대상자졸업앨범 대금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앨범대금지원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교과서대금지원			
			저소득층자녀교과서대금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교과서대금지원
			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저소득층자녀기숙사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기숙사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지원
			컴퓨터구입비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
		누리과정지원			
			유치원누리과정지원	학생복지비	유치원누리과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수당	강사수당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교육운영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여비	여비
			통폐합학교통학지원	학생복지비	원거리학생교통비지원 원거리학생하숙비지원
		학생장학지원			
		학생장학금지원			
			장학금지원	학생복지비	장학금(교특지원, 학교자체지원)
		기타학생복지서비스			
		졸업앨범제작			
			졸업앨범제작	교육운영비	졸업앨범제작
		교지제작활동			
			교지발간	학생복지비	인쇄비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	교육운영비	학생용교과서
		기타학생복지			
			학생증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증제작비
					학생증제작소모품비
				통학차량운영	일반수용비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기타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연료비	차량유류비
				학교직원인건비	운전기사인건비(무기계약직) 통학안내원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운전기사각종부담금(무기계약직) 통학안내원각종부담금(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운전기사인건비(비정규직) 통학안내원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운전기사각종부담금 통학안내원각종부담금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교수학습지원	교육운영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 교육용 소모품 구입 기타 교수학습자료 구입 및 수리비 인터넷 사이트 이용료
				비품구입비	교구기자재 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운영수당	시간강사수당 보결(대강)수당
			학습준비물지원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
			학급운영비	교육운영비	학급운영비
			학급환경정리	교육운영비	우수반시상품 구입 환경미화용품 구입
			교내외환경정리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비품구입비	비품구입
			교재원관리	교육운영비	비료, 농약, 화초 구입
				비품구입비	수목구입 집기 및 기기구입
			청소용품구입	교육운영비	청소용품구입
				비품구입비	기기구입
		국어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사회(역사, 도덕)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수학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과학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교구 기자재 수선
				비품구입비	비품성 실험장비 구입
					교구 기자재 구입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술(가정)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교구 기자재 수선
				비품구입비	교구 기자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체육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교구 기자재 수선
				비품구입비	교구 기자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예술(음악, 미술)교과활동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교과활동			
		교과운영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원어민보조교사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일반수용비		주거비, 정착금 등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특수교육교과활동			
		교과운영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비품구입비	교구 기자재 구입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진로교육교과활동			
		교과운영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학력신장			
		특별보충과정운영	교육운영비	교구 및 교육용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지도교사수당	
		기초학력지도	교육운영비	교구 및 교육용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지도교사수당	
		수준별이동수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교육운영비	교구 및 교육용 소모품 구입	
		전문교과활동			
		교과운영	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인턴교사제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타교과활동			
		보건교육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운영수당	성, 건강, 양성평등,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인성교육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운영수당	학생인성, 학생예절, 학교폭력 예방강사수당
			심화보충교육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운영수당	심화보충교육강사수당
			통일교육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소모성 교구 구입
				운영수당	통일교육강사수당
			안전교육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운영수당	교통안전, 소방안전교육강사수당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체육대회		교육운영비	체육대회 상품 구입
					체육대회 용품 구입
		교내학생축제행사		교육운영비	팸플릿 인쇄, 현수막 제작
					체육대회 용품 구입
		각종경시대회		교육운영비	교내대회 수상자 상품 구입
					소모성 교구 구입
					교외대회 참가학생 출전비
				여비	여비
		기능훈련대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 구입
					훈련생 훈련비
					대회출전비
				여비	여비
		학생회활동		학생복지비	학생회 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졸업여행 학생회임원수련활동 학년별수련활동		교육운영비	상품 구입
					숙박비
					식비
					차량비
					항공료, 기차요금, 승선요금 등
					관람료, 예비비 등
				여비	여비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학생복지비	소모품 구입
					동아리 활동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청소년단체활동	교육운영비	상품 구입		
					교사등록비		
					숙박비		
					차량비		
					항공료, 기차요금, 승선요금 등		
					관람료, 예비비 등		
				여비	여비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다문화교육강사수당	
		진로활동					
			진로지도활동	교육운영비	진로지도검사		
					진학지도프로그램구입		
				교육운영비	교육자료		
					강사수당		
				교육운영비	교육자료		
					강사수당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운영수당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학부모코디네이터 인건비	
기타방과후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자료						
					간식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자료	
간식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산학협력연계교육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산학협력인턴교사 인건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구입 현수막 제작 및 각종 인쇄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여비	여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직업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산업학교위탁교육	
		학교기업			
		학교기업지원	교육운영비	학교기업운영지원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자매결연학교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도서실운영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도서실 운영 소모품 구입
		사서보조원인건비	비품구입비	집기 및 기기 구입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운동부운영	교육운영비	훈련용품 훈련비 출전비	
			여비	여비	
			코치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기약부운영			
		기약부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악기 수리				
	훈련비				
	출전비				
	여비			여비	
				비품구입비	악기 구입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영재교육운영			
		영재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발명반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외국어캠프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강사수당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탁교육	교육운영비
					학생위탁교육비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육(교무)전담보조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구 학부모회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교무학사운영	교육운영비	교육계획서 및 각종 인쇄물 제작	
				수업용 물품 구입	
		교육활동홍보	교육운영비	학교홍보물 제작	
		입학식행사	교육운영비	홍보물 제작	
				행사용품 구입	
		졸업식행사	교육운영비	상장인쇄	
				상품구입	
				행사용품 구입	
		개교기념행사	교육운영비	안내장, 유인물 인쇄	
				상품구입	
				행사용품구입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	교육운영비		시험지구입 및 OMR카드구입
					과목별 성적우수자 상품 구입
					학년별 모의고사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운영			
		교내외학생생활지도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
					상품구입
			기타공공요금		안심알리미서비스
			여비		교외지도여비
		배움터지킴이운영	운영수당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여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운영수당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수당
		연구학교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인턴교사각종부담금
		연구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
					소모품 구입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구입비		집기, 기기 구입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운영	교육운영비		방송실 자료 및 소모품 구입
					방송기자재 수리비
			비품구입비		방송기자재 구입비
		학교상담실운영			
		상담실운영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자료제작
					상담실 운영 소모품 구입
					집기수리비
			비품구입비		상담실 집기 구입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여비	상담자원봉사자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학교내대안교실운영	운영수당	강사수당
				교육운영비	교육자료
			학교상담실(Wee클래스)운영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자료제작
				여비	상담자원봉사자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교육운영비	사무용품비
					교재비
					건물유지보수비
					기자재수리비
					실험실습비
				비품구입비	집기 및 기기 구입
			정보화실운영		
			전산보조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정보화실운영	교육운영비	정보화실소모품 구입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화기기 수리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기타학습지원실운영		
			기타지원실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 구입
					기자재 수리비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책걸상교체및수선	일반수용비	학생책걸상 수리
				비품구입비	학생책걸상 구입
			사물함교체및수선	일반수용비	사물함 수리
				비품구입비	사물함 구입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칠판교체및수선	일반수용비	칠판 수리
				비품구입비	칠판 구입
		교단선진화			
			노후PC교체	비품구입비	컴퓨터 구입
			TV교체	비품구입비	TV 구입
			빔프로젝터 구입	비품구입비	빔프로젝터 구입
		과학실현대화			
			과학실현대화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구입비	과학실집기 구입
		보건실현대화			
			보건실현대화사업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구입비	비품 및 기기 구입
		도서실현대화			
			도서실현대화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구입비	도서실 집기 및 기기 구입
		행정실현대화			
			행정실현대화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구입비	행정실 집기 구입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				
	부서기본운영				
		부서공통운영		여비	여비
		교장실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학교장 회비
					학교장 격려비
					경조사비
					기관운영경비
			직책급여업무추진비	학교장직책급 업무추진비	
		행정실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내빈용 다과비
					행정실 협의회
		교무실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부별 협의회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여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방송통신고등학교협의회
					기관운영경비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병설유치원운영			
		유치원교과활동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	
			교육운영비	학습자료 구입	
				교수용 웹자료 구입	
				교구기자재 수선	
			유치원행사	교육운영비	원아모집 현수막 제작
					입학 및 졸업상품 구입
					소모품 구입
			유치원현장체험학습	교육운영비	차량비
					입장료 및 체험료
				여비	여비
			졸업앨범제작	교육운영비	졸업앨범비
			유치원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교육운영비	환경미화용품 구입
				일반업무추진비	협의회
				비품구입비	살균소독기 구입
					칠판 및 카페트 구입
			종일반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종일반 인건비
				교육운영비	간식 구입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전기 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 요금	
			기타공공요금	우편 요금	
				전화 요금	
				인터넷 통신비	
				위성, 유선방송 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제세	
				연료비	냉난방용 도시가스
			난방유		
		냉난방용 기기 유류비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당직관리	운영수당	일·숙직비
				일반수용비	유인경비, 유·무인기계경비위탁
			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시설관리용역비
					소방시설관리용역비
					승강기관리용역비
					오수정화조관리용역비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도시가스정기검사및승강기정기 검사수수료
					방화관리자회비
					소규모수선비
					냉난방기 및 키폰수리
					시설 소모품 구입비
				기타공공요금	가스안전배상책임보험및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
			폐기물처리	일반수용비	폐기물 처리비
			화장실관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화장실 청소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소규모 수선비
					화장실 소모품 구입
					화장실 청소 용역비
					오수정화조 수거료
			체육관관리	일반수용비	소규모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다목적실관리	일반수용비	소규모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수영장관리	일반수용비	수영장시설보수
					수영장약품구입비
		일반행정관리			
		행정지원인력운영			
			행정보조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구 학부모회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학교직원인건비	인건비(무기계약직)
				기타직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비정규직)
				기간제법정부담금	각종부담금

정책	단위	사업			산출 내역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등
		일반행정사무관리			
		행정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각종 토너 구입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학교봉투인쇄비
					간행물 구독료
					도서 구입비
					각종 수수료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복사기 및 팩스 등 수리
				비품구입비	사무용 기기 구입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경비
				여비	위원회 참석 수당
		유관기관협력			
		유관기관업무협의회	일반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경비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회운영	일반수용비	행사 인쇄물 제작비	
				행사용품 구입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비 및 다과비	
			학부모교육	여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운영수당	학부모 대상 학교행사 강사수당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다과 구입비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교실증축	시설비	호우 피해 복구 토목 공사	
				조경공사	조경 공사
				교실 증축	교실 증축
					증축 교실 전기 공사
				증축 교실 통신 공사	

사업					산출 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증축 교실 소방 공사
					증축 교실 기계 설비 공사
		수영장유지보수		시설비	수영장 시설 공사
				적립금	적립금
		인조잔디유지보수		시설비	인조잔디 구장 설치 공사
				적립금	적립금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제4장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I 일반지침

### 1. 기준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 가. 정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추진
- 나.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의 활용을 억제하고, 연도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최대한 절감 운용
- 다. 이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 금지
- 라. 모든 사업비에 대해 최대한 절감 집행

### 2.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 가. 예산집행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

- 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공개견적을 받아 집행
  - ❖ 단, 차량임차 계약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2인 이상 견적
- 2)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1년 이상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준수

#### 나. 청렴계약 실시

- 1)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계약에 있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 체결(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제33조의2)
- 2)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가능(같은 규칙 제33조의3)
- 3)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청렴계약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학교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에듀파인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개(같은 규칙 제33조의4)

#### 다. 수의계약 업체선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터(S2B) 적극 활용

- ❖ 특정업체 1곳을 지정한 견적요청은 최대한 억제

**라. 단위학교 물품구매 시 요구자(교사) 의견수렴 및 검수 등 참여 활성화**

- 1) 품의 요구 시 규격 및 사양을 정확히 기재
- 2) 물품구매 시 1천만원 이상의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강화  
(「각급학교 물품구매 계약관련 비리예방 자체방안 알림」 교육재정과-4394, 2011.3.11.)
- 3) 검수 시 요구자 및 구매담당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절차 이행 철저

**마. 각종 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급식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경비의 이중 지급 방지**

**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 법인카드 사용 관련 유의사항**

-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학교회계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함
- 법인카드는 출납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을 반드시 제출  
※ 업무와 관련이 적은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제한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이용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방), 호프홀, 소주홀 등
-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해야 함

**3. 세출예산 적기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화 도모

나. 예산의 집행상황을 예비결산 등을 통하여 수시 점검하여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한 기본적교육활동 및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추경을 통해 학교회계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반영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

## II 세부집행지침

### 1. 인건비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당은 법령 및 지침 등에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음

#### 가.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 1) 임금의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http://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http://www.kenca.or.kr>)
- 2)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

#### 나. 시간외근무수당

- 1)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름
- 2)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
- 3)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할 수 없음(관련 : 교육부 교원연수복지과-2058, 2013.6.5. 및 같은 과 2156, 2013. 6.11.)
  - 가)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나) 교직원 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2. 운영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정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 팸플릿(pamphlet),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를 전제로 절감하여 집행
- 물품 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여 최대한 예산 절약
- 학교교육계획서, 각종 정책자료, 홍보·장학자료 등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접근 및 활용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가급적 책자 인쇄 및 보관에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방지
- 소모성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한 억제
- 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입은 신용카드사용이 원칙.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집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 가능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철저
  - ❖ 상품권 구매 관련 유의사항
    -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알림[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013(2013.10.1.)]에 의거 지침 수립 추진 중(교육재정과)으로 지침 시행 전까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집행
      - 상품권 구매 시 견적비교 등 충분히 검토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 우선 선택
      - 상품권 사용 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 상품권 배부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별도서식)
      - 학교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 예산사업별, 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출예산을 적기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 집행잔액을 몰아서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1) 공공요금의 조화·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2)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3)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컴퓨터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사적용도 사용 제한
  - ❖ 특히, 전기사용에 관하여 한전 i-Smart 시스템 분석 활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최대수요전력 장치 설치 및 적정 운영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 알림」 교육시설과-4355, 2013. 8. 8.)
- 4) 각종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

### 나. 특근매식비

- 1)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
- 2) 지급단가는 7,000원/식·인
- 3)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지문인식기 자료를 통한 시간외 근무 확인 등)
- 4)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기존 사용 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참조

### 다. 여비

- 1)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함
- 2) 각급학교의 장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화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 억제
- 3) 관외출장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 등으로 출장이행을 반드시 확인
- 4)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름

5)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예 :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학생수련활동 시 여비 등 지급 요령

- 가)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추진 시 학교관계자(인솔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여 인솔교직원의 여비를 수익자부담경비 또는 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함
- 나) 일비는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실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비의 1/2을 감하여 지급

7) 항공운임 조정 지급

- 가)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
- 나)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보수여비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라. 업무추진비**

-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2) 학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에서 집행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2014년 회계부터 시행)

○ 공개방법

구분	내 용	비 고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인홈페이지(www.pen.go.kr) ☆ 행정마당 → 기록관(정보공개) → 부산광역시교육청기록관 →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방」 → 「각급학교」	
공개내역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학교에서 집행한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 분기별 공개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예) 2014년 1,2,3월분 ⇒ 4월 10일까지 공개	

## 3)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

- 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년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
- 나) 업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특수한 업무 및 일반적인 업무 등 모든 업무 수행을 의미(특히,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찬조금 및 격려금 등 지급 불가)
- 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私的)인 경조사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
- ❖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결과(2009. 4. 12.~4. 22.) 처분사항 중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재발 방지 대책
    -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교장단협의회비 지출 가능
      - 전국단위협의회비 : 연 1회 이내
      - 지역단위협의회비 : 연 1회 이내
    - ☞ 지구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교감협의회비, 행정실장협의회비 등 지출 불가

## ※참고사항

- 2009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조치 내역
  - 사적(私的) 경·조사비 25건 2,244천원(기관주의 및 회수)
  - 각종 협의회비 20건 1,460천원(기관주의 및 회수)

- 라)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마) 축의·부의금품 지급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 대상자 : 소속직원 및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바) 업무추진비 지출은 해당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조사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사)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준용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행동강령 주요 위반 유형 >**

-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한 집행
  - ▲ 집행대상이 아닌 명목의 집행 : 돌, 회갑,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병문안, 인사 이동자 축하 등
  - ▲ 관할 부서 또는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 대한 집행
  - ▲ 사적단체,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단체에 대한 집행 등
-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알림[감사관-3383(2012. 6. 22)] 참고

[서식]

**상품권 배부대장**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결재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구매 수량 (금액)	누계	일자	종류	목적 (내용)	수량인 (서명)	지급 수량 (금액)	누계	담당	출납원
1																
2																
3																

- 저소득층 등 특정대상에게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

# 각종 서식





# 1 제출서류 일람표

구 분	대상기관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당초예산서	각급학교	2014.3.16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서식2]</li> </ul>
추가경정 예산서	각급학교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확정으로 자동 반영</li> </ul>
2013학년도 결산서	각급학교	결산 심의 후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2014.6.1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결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결산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서식2]</li> <li>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현황 [서식3]</li> <li>4. 기금 적립 현황[서식4]</li> <li>5. 불용액 명세서[서식5]</li> <li>6. 예금잔액증명서 (퇴직적립금 포함, 금융기관 양식)</li> <li>(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조서 첨부)</li> </ul>

1. 유·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특수학교 : 예·결산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
  - 예·결산서는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확정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제출 생략
2. 각종학교 :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
3. 관할청에서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출서식

### 목 록

[서식 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 2] 업무추진비 현황

[서식 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현황

[서식 4] 기금 적립 현황

[서식 5] 불용액 명세서



[서식 2]

**업무추진비 현황**

● 학교명 :

▣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

(단위 : 천원)

학급수 ①	교직원수				학교당 경비 ③	학급당 경비 (1학급당) ④=①×60천원	교직원당 경비 ⑤=②×80천원	계상 한도액 (⑥=③+ ④+⑤)
	정규직 현원	기간제 교원	기타	소계 ②				

※ 참고사항

- 기준일자 : 해당학년도 3월 1일 기준
- 기간제 교원 및 기타(민간인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주 40시간 이상, 1년 이상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한 자

▣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①	목적성 경비 업무추진비 ②	학교자체 업무추진비 ③	합계 ①+②+③

※ 참고사항

- ① 직책급업무추진비 : 학교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 활동 경비
- ② 목적성 경비 업무추진비 : 교육청,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에서 교부받은 목적성 경비 중 업무추진비 편성액
- ③ 학교자체업무추진비 : 학교자체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편성액
- ❖ ③은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 이하가 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액 ①	목적성 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액 ②	학교자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①+②+③
		계상한도액	편성액	집행액③	

※ 참고사항 : 결산 시 제출(예산서 제출시에는 공란으로 처리)

[서식 3]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포함) 퇴직금 현황**

● 학교명 :

(단위 : 천원)

구분 직종별	기 적 립 현 황				2013학년도 퇴직금 현황					적립금 이월액 (①+②-③)	비고
	적립 인원	퇴 직 적립금	예금 이자	소계 ①	적 립			해 지			
					적립 인원	퇴직금 예산액	적립액 ②	지급 인원	해지액 ③		
(예시)											
교무보조											
조리종사원											
계											

※ 참고사항

- 직종별 분리 작성
- 해지액③ : 기적립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 적립금 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금액

[서식 4]

**기금 적립 현황**

● 학교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최초 적립년도	기적립금액 ①	2013학년도 현황		소 계 ①+②-③
			적립②	해지③	
(예시)					
인조잔디교체비	2009	100,000	50,000		150,000
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	2009	20,000		20,000	0
합 계		120,000	50,000	20,000	150,000

※ 참고사항

- 적립금 : 10년 뒤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등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시설적립금, 고가의 물품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향후 장비교체를 위한 적립금 등
- 해지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 적립된 금액을 학교회계 적립금 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금액
- 향후 적립금 유치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기금적립 및 활용 계획, 집행 현황 등 점검 예정

[서식 5]

**불용액 명세서**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불용액 ②-③-④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	·	·						
·	·	·						
계								

※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월액 ④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사유가 미비할 경우 별도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3 학교회계 예·결산서(현황) 서식

#### 학교회계 예산서 및 예산현황 서식

1. [서식 1] 예산총칙 .....	102
2. [서식 2] 세입 세출 예산 총괄 .....	103
3. [서식 3] 부서사업별 예산 총괄 .....	104
4. [서식 4] 부서사업설명서 .....	105
5. [서식 5] 세부사업설명서 .....	107
6. [서식 6] 세입사업설명서 .....	109
7. [서식 7] 정책사업설명서 .....	111
8. [서식 8] 단위사업설명서 .....	112
9. [서식 9] 세입 장 설명서 .....	113
10. [서식 10] 세입 관 설명서 .....	113
11. [서식 11] 세입 항 설명서 .....	114
12. [서식 12] 세입 목 설명서 .....	114
13. [서식 13] 세입예산 명세서 .....	115
14. [서식 14] 세출예산 명세서 .....	115
15. [서식 15] 세입 예산 조서 .....	115
16. [서식 16] 부서별 세출 예산 조서 .....	116
17. [서식 17] 사업별 세출 예산 조서 .....	116
18. [서식 18] 성질별 세출 예산 조서 .....	116
19. [서식 19] 계속비 사업 예산조서 .....	117
20. [서식 20] 명시이월 사업 예산조서 .....	117
21. [서식 21] 의존 자원별 세입예산 현황 .....	117
22. [서식 22] 정산 자원별 세입예산 현황 .....	118
23. [서식 23] 사업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118
24. [서식 24] 사업별 운영비 세출예산 현황 .....	119
25. [서식 25] 교육목표별 세출예산 현황 .....	119
26. [서식 26] 부서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현황 .....	120

[서식 1]

## 예산총칙

예산구분 : 본예산

(단위:천원)

예산확정일		예산액	
-------	--	-----	--

<p><b>제1조</b></p> <p><b>제2조</b></p> <p><b>제3조</b></p> <p><b>제4조</b></p> <p><b>제5조</b></p>	<p>2000년도 00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000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p> <p>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p> <p>2000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p> <p>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연구비, 제수당</li> <li>2. 학교회계직원인건비, 비정규직보수</li> <li>3. 각종 공과금</li> </ol>
---	---

1. 본 예산총칙은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예) 제4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와 관할청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은 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명시이월비 포함)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라고 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2.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한다.
3.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서 규정한 것 중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

<p><b>예산 총칙(예시)</b></p> <p>2000학년도 00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중 세입·세출 각각 “000원”을 “000원”으로 한다.</p>
---

[서식 2]

## 세입 세출 예산 총괄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예산구분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증감률	최종예산	증감률

세입				세출			
장	관	예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구성비

[서식 3]

### 부서사업별 예산 총괄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 사업수	세출						세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4]

## 부서사업설명서

부서명	
-----	--

부서장	☎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예산현황

1.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세출						세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2.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담당자	세부사업	세출			세입		
		전년예산액	예산액	증감	전년예산액	예산액	증감
합 계							

3. 세출 사업현황

(단위 : 천원, %)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4.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5. 성질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6. 운영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서식 5]

###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명	
-------	--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세부항목	세출						세입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 률
									계	정산	일반			

2. 세출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 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 증감
합 계						

### 3. 세입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 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 증감
합 계						

### 4.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5. 성질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6. 운영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서식 6]

## 세입사업설명서

사업명	세입사업관리
-----	--------

부서	행정실	정산재원		( % )
담당자	☞	일반재원		( %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장	관						
합 계							

2. 부담 주체별 자원현황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정책사업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 재무활동							
합 계							

### 3. 목적지정 자원현황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정산재원명		전년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법인/타학교전입금							
일반재원							
합 계							

### 4. 정책사업별 자원투자 현황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7]

###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명	
-------	--

학교명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	세출						세입재원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3. 성질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4. 운영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비고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단위 : 천원)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서식 8]

##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명	
-------	--

정책사업명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출						세입재원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3. 성질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4. 운영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단위 : 천원,%)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서식 9]

### 세입 장 설명서

세입-장	
------	--

학교명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예산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입-관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0]

### 세입 관 설명서

세입-관	
------	--

세입-장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예산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입-항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1]

### 세입 항 설명서

세입-항	
------	--

세입-관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

예산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입-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2]

### 세입 목 설명서

세입-목	
------	--

세입-항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

예산현황

1.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 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3]

### 세입예산 명세서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서식 14]

### 세출예산 명세서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서식 15]

### 세입 예산 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6]

### 부서별 세출 예산 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사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7]

### 사업별 세출 예산 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단위사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8]

### 성질별 세출 예산 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

목그룹	목	세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서식 19]

### 계속비 사업 예산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 세부사업 :
- 사업기간 : ~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2013 (Y-1)	2014 (해당연도)	2015 (Y+1)	2016 (Y+2)	2017 (Y+3)
당초						
변경						
증감						

[서식 20]

### 명시이월 사업 예산조서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당초						
변경						
증감						

[서식 21]

### 의존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22]

### 평산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23]

### 사업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24]

### 사업별 운영비 세출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25]

### 교육목표별 세출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서식 26]

## 부서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현황

- 회계연도 :
- 예산구분 :
- 학 교 명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 사업	세출						세입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전년 예산액	구성 비	예산액			구성 비	비교 증감	증감 률	
										계	정 산	일 반				
	합 계															

## 학교회계 결산서 및 결산현황 서식

1. [서식 27]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122
2. [서식 28] 부서 사업별 결산 총괄표 .....	123
3. [서식 29] 부서사업설명서 .....	124
4. [서식 30] 세부사업설명서 .....	126
5. [서식 31] 세입사업설명서 .....	128
6. [서식 32] 정책사업설명서 .....	130
7. [서식 33] 단위사업설명서 .....	131
8. [서식 34] 세입 장 설명서 .....	132
9. [서식 35] 세입 관 설명서 .....	132
10. [서식 36] 세입 항 설명서 .....	133
11. [서식 37] 세입 목 설명서 .....	133
12. [서식 38] 세입결산 명세서 .....	134
13. [서식 39] 세출결산 명세서 .....	134
14. [서식 40] 과목별 세입결산 조서 .....	134
15. [서식 41] 사업별 세입결산 조서 .....	134
16. [서식 42] 부서별 세출결산 조서 .....	135
17. [서식 43] 사업별 세출결산 조서 .....	135
18. [서식 44] 성질별 세출결산 조서 .....	135
19. [서식 45] 예비비 사용명세서 .....	135
20. [서식 46] 세출예산이(전)용 명세서 .....	136
21. [서식 47] 계속비조서 .....	136
22. [서식 48] 명시이월비 명세서 .....	136
23. [서식 49] 사고이월비 명세서 .....	137
24. [서식 50] 계속비이월비 명세서 .....	137
25. [서식 51] 불용 사유별 현황 .....	137
26. [서식 52] 목적사업비 집행현황 .....	138
27. [서식 53] 보조금 및 지원금 집행현황 .....	138
28. [서식 54] 발전기금전입금 집행현황 .....	138
29. [서식 55] 수익자부담금 집행현황 .....	138
30. [서식 56] 전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139
31. [서식 57] 전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139
32. [서식 58] 사업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	139
33. [서식 59] 사업별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	140
34. [서식 60]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	140

[서식 27]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환확정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원)

세입				세출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서식 28]

## 부서 사업별 결산 총괄표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부서	세부 사업수	세출				세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서식 29]

## 부서사업설명서

부서명	
-----	--

부서장	☎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결산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원, %)

세출						세입					
예산 현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잔액	증감률	예산 현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잔액	증감률

2.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원, %)

담당자	세부사업	세출				세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3. 세출사업 현황

(단위 : 원, %)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다음 연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증감률

4.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 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 기금	일반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5.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단위 : 원)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 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0]

##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명	
-------	--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부항목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 세출 각목명세서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 세입 각목명세서

목	원가통계 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4.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 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5.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서식 31]

## 세입사업설명서

사업명	세입사업관리
-----	--------

부서	행정실	정산자원 결산액	( %)
담당자	☎	일반자원 결산액	(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세입과목		예산 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납액	증감률
장	관										
합 계											

2. 부담 주체별 결산현황

(단위 : 원)

의존재원명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납액	증감률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3. 자원별 결산현황

(단위 : 원)

정산재원명	예산 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납액	증감률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법인/타학교 전입금										
일반재원										
합 계										

4. 정책사업별 자원투자 현황

(단위 : 원)

정책사업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 재무활동							
합 계							

[서식 32]

##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명	
-------	--

학교명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단위사업	세출				세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 교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 기금	일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4.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비고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결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3]

###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명	
-------	--

정책사업명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세출				세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 타학교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 기금	일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4.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비고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결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4]

### 세입 장 설명서

세입-장	
------	--

학교명		세입결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세입-관	예산 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 납액	증감률
합 계										

[서식 35]

### 세입 관 설명서

세입-관	
------	--

세입-장		세입결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세입-관	예산 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 납액	증감률
합 계										

[서식 36]

### 세입 항 설명서

세입-항	
------	--

세입-관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 : 원,%)

세입-목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 납액	증감률
합 계										

[서식 37]

### 세입 목 설명서

세입-목	
------	--

세입-항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

결산현황

1. 각목명세서

(단위 : 원,%)

원가통계 비목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률	불납 결손액	증감률	미수 납액	증감률
합 계										

[서식 38]

###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세입합계									

[서식 39]

###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세출합계									

[서식 40]

### 과목별 세입결산 조서

(단위 : 원)

장	관	항	목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서식 41]

### 사업별 세입결산 조서

(단위 :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합 계									

[서식 42]

### 부서별 세출결산 조서

(단위 : 원)

부서	세부 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3]

### 사업별 세출결산 조서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4]

### 성질별 세출결산 조서

(단위 : 원)

목그룹	목	세목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5]

###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지출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원가 목							

[서식 46]

### 세출예산이(전)용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서식 47]

###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해 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주)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해당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 기입함.

[서식 48]

###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	이월액 (D)	불용액 (A)-(B)-(D)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서식 49]

###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지출잔액	이월액 (C)	불용액 (A)-(B)-(C)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서식 50]

### 계속비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 (C)	사 유
정책	단 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서식 51]

### 불용 사유별 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 사업	예산 현액 (A)	불용액 (B)	사유별 미집행액						불용 비율 (B/A)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소계	

[서식 52]

### 목적사업비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보조사업명	교부총액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3]

### 보조금 및 지원금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4]

### 발전기금전입금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5]

### 수익자부담금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입원가비목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6]

### 전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전년 이월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서식 57]

### 전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전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서식 58]

### 사업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서식 59]

### 사업별 운영비 세출결산 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서식 60]

###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 회계연도 :

● 학 교 명 :

(단위 : 원, %)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 부부





# 1 학교회계 참고 사항

## ◇ 계약일반(교육재정과)

### 1. 지정정보처리장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2호]

-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의 경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중 2천만원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의 경우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 2. 공사에정금액 1천5백만원이상 건설공사는 전문면허업 소지자가 시공

- 공사에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예외적으로 1천5백만원 미만이라도 전문면허소지자가 하여야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 각각의 면허소지업체만이 시공

### 3. 지역제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공사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경우
  - 해당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제안요청 기준
  - 학교의 경우 **1회 납품요구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 요청 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단,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가구류의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업체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시 계약상대자간에는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 5.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①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용어정의

- 동일구조물공사(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 단일공사(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되는 공사
  -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 를 준용한다.

## ◇ 학교시설 사용료(교육재정과)

학교의 운동장 및 체육관(강당) 등 사용료 징수 시 2011. 8. 3.자 개정·시행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1 <각종사용료 징수기준>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규정된 사용료 보다 과다징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별표 1]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
체육관 강 당	12,500	35,000	60,000	전용면적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대운동장	25,000	35,000	6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읍·면지역은 위 기준의 50/100을 감면함
-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함
- 단, 냉난방기, 체육관 및 강당 전용면적 660㎡ 초과 시설,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시설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
체육관 강 당	30,000	50,000	100,000	전용면적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대운동장	30,000	50,000	12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감독 등 시설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 기타를 말함

## 2 전년대비 2014년 주요 변경 내용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3	<p>I. 목적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학교(이하“학교”)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b></p>	<p>I. 목적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3	<p>II. 적용대상 본 지침은 유·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회계에 적용한다.-----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p> <p><b>【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b></p>	<p>II. 적용대상 본 지침은 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회계에 적용한다.-----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p>																		
3	<p>1. 회계의 설치단위 가. 학교회계는 공립 유·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p> <p><b>【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b></p>	<p>1. 회계의 설치단위 가. 학교회계는 공립 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p>																		
13	<p>5. 결산 가. 결산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text-align: center;"><b>결산심의 확정</b></td> <td style="padding: 5px;">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말까지)</td> <td style="padding: 5px;">•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text-align: center;"><b>결산보고 및 공개</b></td> <td style="padding: 5px;">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10일)</td> <td style="padding: 5px;">•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td> </tr> </table> <p><b>【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제21조】</b></p>	<b>결산심의 확정</b>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b>결산보고 및 공개</b>	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10일)	•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p>5. 결산 가. 결산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text-align: center;"><b>결산심의 확정</b></td> <td style="padding: 5px;">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6월말까지)</td> <td style="padding: 5px;">•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text-align: center;"><b>결산보고 및 공개</b></td> <td style="padding: 5px;">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10일)</td> <td style="padding: 5px;">•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td> </tr> </table>	<b>결산심의 확정</b>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6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b>결산보고 및 공개</b>	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10일)	•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b>결산심의 확정</b>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b>결산보고 및 공개</b>	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10일)	•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b>결산심의 확정</b>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6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b>결산보고 및 공개</b>	심의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10일)	•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15	<p>5. 결산 가.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2)세출결산 마.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u>3개월</u> 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제21조】</b></p>	<p>5. 결산 가.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2)세출결산 마.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u>4개월</u> 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26	<p>4) 선택적 교육활동 다) 직업교육 ❖ <u>산업학교</u> 등에 학생교육을 위탁하는 학교에서는 위탁학생 1인당 <u>100,000원</u>을 학년 초(3월 중)에 위탁학교로 전출한다.</p> <p><b>【관련 : 과학직업정보과 - 9974, 2013. 11. 28.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운영경비 인상 지원】</b></p>	<p>4) 선택적 교육활동 다) 직업교육 ❖ <u>산업학교</u>에 학생교육을 위탁하는 학교에서는 위탁학생 1인당 <u>50,000원</u>을 학년 초(3월 중)에 위탁학교로 전출한다.</p>																				
28	<p><b>《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b>  <b>▣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b>                      ①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기획인적자원과-755, 2004. 6. 22.』 참조                      ❖ 2004. 7월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u>호봉제 채용 금지</u>                      ③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b>행정관리과-공개자료실(168번), 2013. 9. 23.</b>』 참조</p> <p><b>【학교회계직원 채용 관련 문구 수정】</b></p>	<p><b>《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b>  <b>▣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b>                      ①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기획인적자원과-755, 2004. 6. 22.』 참조                      ❖ 2004. 7월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u>반드시 연봉제로 채용</u>                      ③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b>행정관리과-공개자료실(92번), 2007. 10. 1.</b>』 참조</p>																				
29	<p>▣ <b>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제외)</b>  <b>【 3대 직종(교무, 과학, 전산) 배치 기준 】</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치원</th> <th>초·중학교</th> <th>고등(특수)학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인원</td> <td>1</td> <td>2</td> <td>1</td> <td>유치원은 공립만 해당</td> </tr> </tbody> </table> <p><b>【특수학교 추가】</b></p>	구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특수)학교	비고	인원	1	2	1	유치원은 공립만 해당	<p>▣ <b>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제외)</b>  <b>【 3대 직종(교무, 과학, 전산) 배치 기준 】</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치원</th> <th>초·중학교</th> <th>고등학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인원</td> <td>1</td> <td>2</td> <td>1</td> <td>유치원은 공립만 해당</td> </tr> </tbody> </table>	구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인원	1	2	1	유치원은 공립만 해당
구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특수)학교	비고																		
인원	1	2	1	유치원은 공립만 해당																		
구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인원	1	2	1	유치원은 공립만 해당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29 ~ 30	<p>▣ 퇴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u>위험수당</u></li> </ul> </li> <li>○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학부모회 직원의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u>성과상여금</u></li> <li>❖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는 제외</li> </ul> <p><b>【월정, 비월정임금 내용 수정】</b></p>	<p>▣ 퇴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li> </ul> </li> <li>○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학부모회 직원의 정근수당, 연가보상비</li> <li>❖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는 제외</li> </ul>
32	<p>②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목적사업비내의 업무추진비 계상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성 경비, 자산취득성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편성</li> <li>- 단, 법령이나 타기관 등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li> </ul> </div> <p><b>【목적사업비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신설】</b></p>	<p>②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33	<p>3. 학교예·결산소위원회 구성 <u>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소위원회 설치)에 따라 구성</u></p> <p><b>【관련 근거 수정】</b></p>	<p>3. 학교예·결산소위원회 구성 <u>교육지원과-1657(2012. 3. 2)의 『201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계획 알림』에 따라 구성</u></p>
34	<p>4.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라.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직원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p> <p>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239 (2008.10.10.)</li> <li>○ <u>2013 현장체험학습 표준매뉴얼 (학교폭력근절과-939, 2013.3.28)</u></li> <li>- <u>시교육청홈페이지 학교폭력근절과 공개자료실 129 게시</u></li> </ul> <p><b>【관련 문서 갱신】</b></p>	<p>4.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라.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직원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p> <p>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239 (2008.10.10.)</li> <li>○ <u>2010 현장체험학습 표준매뉴얼 (중등교육과-5003, 2010.3.23)</u></li> </ul>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34	<p>5. 학교재정운영의 공개</p> <p>-----이 경우  <u>유·초·중학교</u>는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등·특수학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예·결산서 공개방에 게시토록 한다.</p> <p><b>【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b></p>	<p>5. 학교재정운영의 공개</p> <p>-----이 경우  <u>초·중학교</u>는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등                      ·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예·결산산서 공개방에 게시토록 한다.</p>
35	<p>6.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집행</p> <p>라. -----</p> <p>❖ <u>운전원 외에도 각급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                      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u></p> <p>마. <u>교직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                      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직무                      연수 훈련여비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                      록 한다.</u></p> <p><b>【문구 수정 및 신설】</b></p>	<p>6.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집행</p> <p>라. -----</p> <p>(<u>운전원 외에도 각급학교 재정상황에 따                      라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37 ~ 47	<p>제2장 2014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p> <p><b>【2014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안내】</b></p>	<p>제2장 2013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p>
49 ~ 82	<p>제3장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p> <p>“이하생략”</p> <p><b>【교육부 세입·세출 과목 일부 수정(과목코드 포함)에 따른 내용 변경】</b></p> <p>- (세입) 민간이전수입의 기타지원금, 수익자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사용료 과목해설                      변경, 누리과정비 추가, 학부모부담지원금 수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 누리과정지원 목 추가</p>	<p>제3장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p> <p>“이하생략”</p>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p>- (세부사업)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 단체활동지원, 졸업앨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p> <p>신설, 전문교과활동 신설, 현장체험학습활동 신설, 생활지도운영 신설</p> <p>- (세출·성질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학교직원인건비로 변경, 직책급업무추진비 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 세목항목으로 이동, 기타자산취득비 원가통계비목 신설</p>	
83 ~ 92	<p>제4장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하생략”</p> <p><b>【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신설】</b></p>	신 설
91	<p>③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 → 제4장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으로 내용 이동</p> <p>○ ----- ----- -----</p> <p>❖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결과(2009.4.12.~4.22.) 처분사항 중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재발 방지 대책</p> <p>-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b>교장단협의회비</b> 지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협의회비 : 연 1회 이내</li> <li>• 지역단위협의회비 : 연 1회 이내</li> </ul> <p>☞ 지구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교감 협의회비, 행정실장협의회비 등 지출 불가</p> <p><b>【교장단협의회비 지출 관련 수정】</b></p>	<p>③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p> <p>○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私的)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p> <p>❖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결과(2009.4.12.~4.22.) 처분사항 중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재발 방지 대책</p> <p>-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b>교장단협의회비</b> 지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협의회비 : 연 2회 이내</li> <li>• 지역단위협의회비 : 연 2회 이내</li> </ul> <p>☞ 지구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교감 협의회비, 행정실장협의회비 등 지출 불가</p>

쪽	2014학년도				2013학년도			
	구분	대상 기관	제출 기일	제출 서류	구분	대상 기관	제출 기일	제출 서류
95	당초 예산서	각급 학교	2014. 3. 16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현황[서식1]</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서식2]</li> </ul>	당초 예산서	각급 학교	2013. 3. 16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현황[서식1]</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서식2]</li> </ul>
	추가 경영 예산서	각급 학교	예산 확정후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ul>	추가 경영 예산서	각급 학교	예산 확정후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ul>
	2013 학년도 결산서	각급 학교	결산 심의후 확정일 로부터 10일 이내 (2014. 6.10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결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결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현황 [서식1]</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 [서식2]</li> <li>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현황 [서식3]</li> <li>4. 기금 적립 현황 [서식4]</li> <li>5. 불용액 명세서 [서식5]</li> <li>6. 예금잔액증명서 (적립금 포함, 금융기관 양식)</li> </ul> <p>(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조서 첨부)</p>	2012 학년도 결산서	각급 학교	결산 심의후 확정일 로부터 10일 이내 (2013. 7.10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세입·세출 결산서</li> <li>※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결산 확정으로 자동 반영</li> <li>- 부속서류</li> <li>1. 학교현황 [서식1]</li> <li>1.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1]</li> <li>2. 업무추진비 현황 [서식2]</li> <li>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현황 [서식3]</li> <li>4. 기금 적립 현황 [서식4]</li> <li>5. 불용액 명세서 [서식5]</li> <li>6. 예금잔액증명서 (적립금 포함, 금융기관 양식)</li> </ul> <p>(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조서 첨부)</p>
	<p>1. 유·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특수 학교 예·결산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 - 예·결산서는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확정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제출 생략</p> <p>2. 단설유치원, 각종학교 :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p> <p><b>[제출서류날짜 수정 기본지침적용 대상과 동일]</b></p>				<p>1.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특수 학교 예·결산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 - 예·결산서는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확정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제출 생략</p> <p>2. 단설유치원, 각종학교 :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청으로 제출</p>			
143	<p><b>학교회계 참고 사항</b></p> <p>◇ 계약일반(교육재정과)</p> <p>2. 공사예정금액 <u>1천5백만원</u>이상은 전문면허업 소지자가 시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u>1천5백만원</u> 미만인 건설공사 ※ 예외적으로 <u>1천5백만원</u>-----</p> <p><b>[금액 수정]</b></p>				<p><b>학교회계 참고 사항</b></p> <p>◇ 계약일반(교육재정과)</p> <p>2. 공사예정금액 <u>1천만원</u>이상은 전문면허업 소지자가 시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u>1천만원</u> 미만인 건설공사 ※ 예외적으로 <u>1천만원</u>-----</p>			
144	<p>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 제안요청 기준 • -----<u>1회납품요구액이 3천만원</u>----- ----<u>5인</u>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p> <p><b>[금액 및 문구 수정]</b></p>				<p>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 제안요청 기준 • -----<u>1회납품요구액이 2천만원</u>----- ----<u>5개사</u>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p>			